

'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4월 16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'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제146회('98.3.6) 임시회에서 변경확정한 바 있으나
- 주요사업의 추가 시행으로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<재산의 취득>

- 충청북도립 옥천전문대학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

· 위 치 :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66(도립전문대학 인접부지)

- 규 모 : 2,645.0m²(800평)
- 시 기 : '98 상반기
- 취득가액 : 800,000천원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'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충청북도립 옥천전문대학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'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

본 대학이 '98년도에 개교됨에 따라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경제적·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의 대학인접 부지 800평(2,645.0m²)을 매입하여 도립 옥천전문대학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- '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